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부처 우주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68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6
1. 국가우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16
2. 방위사업청 단독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절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 3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동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등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상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다부처 우주개발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이하 “다부처 우주개발”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부처 우주개발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방위사업법」 제17조1)에서는 일반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방법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2)에서는 우주무기체계 등 10개의 무기체계로 분류하고 있음.

□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그 추진 주체에 따라 방위사업청 단독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구별됨.

1) 「방위사업법」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研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 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2. 레이더 등 감시·정찰무기체계
3. 전차·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동 사업은 그 성격상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위사업법」상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개발 활동’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어,³⁾ 원칙적으로 3개 법률이 모두 적용되어 방위력개선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 따라 사업 심의 및 추진 절차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⁴⁾

다만, 방위사업청 단독으로 수행하는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등⁵⁾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부 절차(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적용이 제외되어 2개의 법률이 적용됨.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다부처 우주무기체계 사업의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도 따라야 하므로 사업 추진 절차상 혼선도 발생하고 있음.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조의2(보안과제)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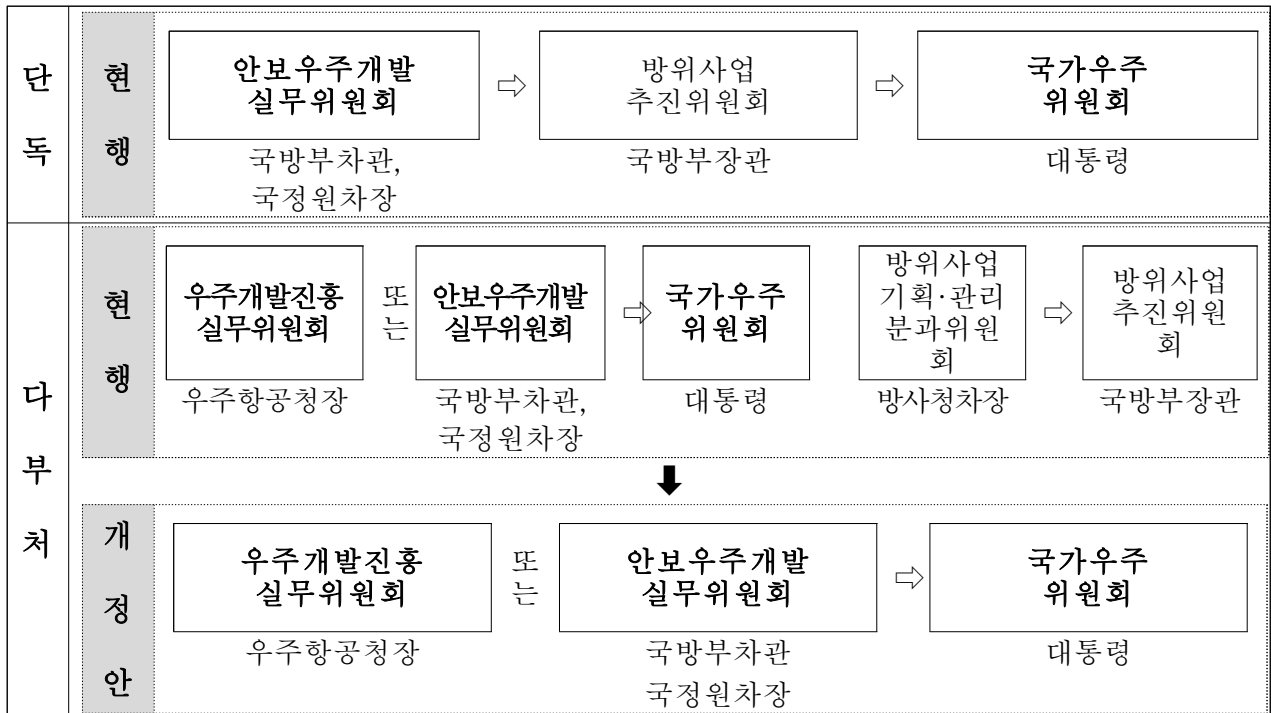
「방위사업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우주개발 진흥법」
· 사업추진방법 결정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 심의(제9조, 제10조) · 선행연구(제17조) · 시험평가(제21조) · 표준화(제26조) · 목록화(제27조) · 품질보증(제28조)	· 사전조사 및 기획, 공고 및 신청(제9조) · 연구개발 과제 및 개발기관 선정(제10조) · 협약(제11조) · 과제 수행 및 관리(제12조) · 과제 협약(제13조) · 연구비 지급·관리(제13조)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제13조) · 결과보고 및 평가(제14조) · 성과의 소유 및 활용촉진(제16조, 제17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8조)	· 우주개발사업의 재원조달·투자계획 승인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및 실무위 심의(제6조)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11조~제13조)

□ 사업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부처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⁶⁾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또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 위원이 중복되거나 같은 안건을 수 차례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⁷⁾

6) [참고자료] 1. 국가우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7) 예컨대, KPS 사업의 경우 2021년 11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국방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2022년 5월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되는 데까지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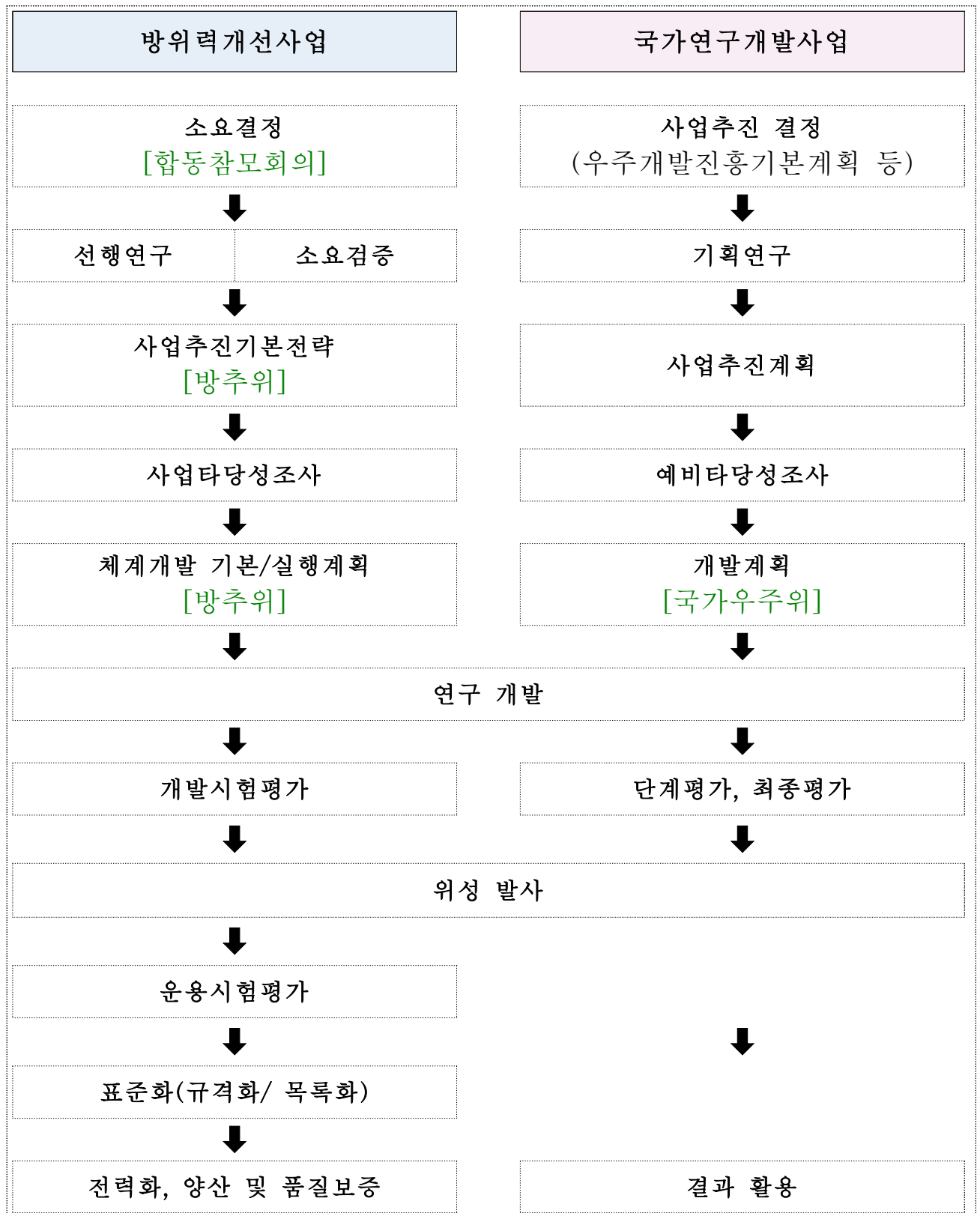
[다부처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심의 단계]



- 1)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심의사항은 방위사업 분야별 분과위원회 생략(「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2)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심의절차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심의절차의 선·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음

□ 사업추진 절차와 관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결정, 선행연구·소요검증과 기획연구, 사업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유사한 절차를 중복하여 거쳐야 함에 따라 혼선 및 과도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주무기체계의 설계수명이 (초)소형위성은 3~5년, 중대형위성은 10~15년으로 일반적인 무기체계수명인 20~30년에 비해 짧기 때문에 전력공백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 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방위력개선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추진절차 비교]



* 방위사업청 제공 자료 재구성

- 현재 방위사업청 단독으로 수행하는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425 사업’ 1개이고,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은 방위사업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KPS 사업’과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이 있음.

[현행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현황]

사업명	425 사업	KPS ⁸⁾	초소형위성체계
사업개요	북한 주요 전략표적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군 독자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북한 및 주변국의 전방위 위협 대비 신속한 징후감시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를 다부처 협력으로 개발하는 사업
사업기간	2015년 ~ 2025년	2022년 ~ 2035년	2022년 ~ 2030년
총사업비	1조 3,306억원	3조 7,235억원 ⁹⁾	1조 4,223억원 ¹⁰⁾
연구개발부처	방위사업청	주관: 우주청 참여: 방사청, 국토부, 해수부, 해경청	주관: 방사청, 우주청 참여: 해경청, 수요처
분류	단독	다부처	

- 이에 개정안은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심의 및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8) Korea Positioning System

9) 우주항공청 13,085억원(35%), 방위사업청 9,351억원(25%), 국토부 7,591억원(20%), 해수부 6,964억원(19%), 해양경찰청 244억원(0.7%) 분담

10) 방위사업청 8,470억원(60%), 우주항공청 3,972억원(28%), 해양경찰청 1,750억원(12%), 수요처 30억원(0.2%)

다부처 사업 추진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절차를 따르되, 시험평가·표준화·품질보증 등 같은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절차는 「방위사업법」상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¹¹⁾를 거치도록 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절차는 따르도록 하여 행정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험평가 등에 있어서는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반면, 우주항공청은 다부처 사업 외에는 우주개발 사업이 전부 「방위사업법」상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다부처 사업임에도 참여부처 간의 협의 절차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의 긍정적인 입법취지에도 법조문 체계 및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에서는 다부처 우주개발의 주체로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도 포함시키고 있음. 현재 국방부는 단독 또는 다부처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11) 「방위사업법」 제21조(시험평가), 제26조(표준화), 제28조(품질보증)

국방부장관이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방위사업법」의 규정을 보면, 국방부장관이 추진 주체로 규정된 업무는 국방중기계획, 사업 타당성조사,¹²⁾ 시험평가 계획수립,¹³⁾ 방위사업 투명화(정책실명제, 청렴서약제¹⁴⁾) 등 방위력개선사업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그 외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및 그 절차(제17조 내지 제22조)에 관한 사항은 모두 방위사업청장 단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점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제33조의 업무분장에도 부합한 것임.¹⁵⁾

12) 「방위사업법」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방위사업법」 제21조(시험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항목·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방위사업법」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이와 같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지원과 사업수행 절차를 두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분배한 「방위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주체로 ‘국방부장관’까지 추가하는 경우 기존 방위사업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등에 사업 주체의 중첩으로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장관’을 사업 주체에서 제외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우주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주무기체계의 개념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고, 우주개발은 「방위사업법」에 따라서만 추진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¹⁶⁾와 같이 ‘우주무기체계’로 수정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만 동 개정안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¹⁷⁾

16)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2. 레이더 등 감시·정찰무기체계
 3. 전차·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17) 또한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에서 ‘우주개발사업’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기술·정보화·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우주개발사업의 개념과도 구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7조의3제1항에서는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3개의 관련 법률 중 그 적용관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단독’으로 추진하는 우주 개발사업¹⁸⁾의 근거가 미약해질 뿐만 아니라 적용 법률에 대한 논란이 새로 야기될 수 있음.¹⁹⁾

따라서 법 제3조의 무기체계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개정안 처럼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우주무기체계 방위력개선사업의 근거와 다부처 사업 적용 특례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에 제3항을 추가하여 다부처 우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법률 적용 특례만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조의2(보안과제)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19) [참고자료] 2. 방위사업청 단독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의견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현 행과 같음)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 사업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방위력개선사업을 다 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추 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 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 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 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의3(다부처 우주개발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 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이하 “다부처 우주개발”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④ (현행 ③항과 같음)
② 다부처 우주개발은 제17조에도 불구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 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	<삭 제>
	<삭 제>

개정안	수정의견
<u>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u>	

- ☐ 참고로 개정안 및 수정의견에 따른 다부처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개정안에 따른 다부처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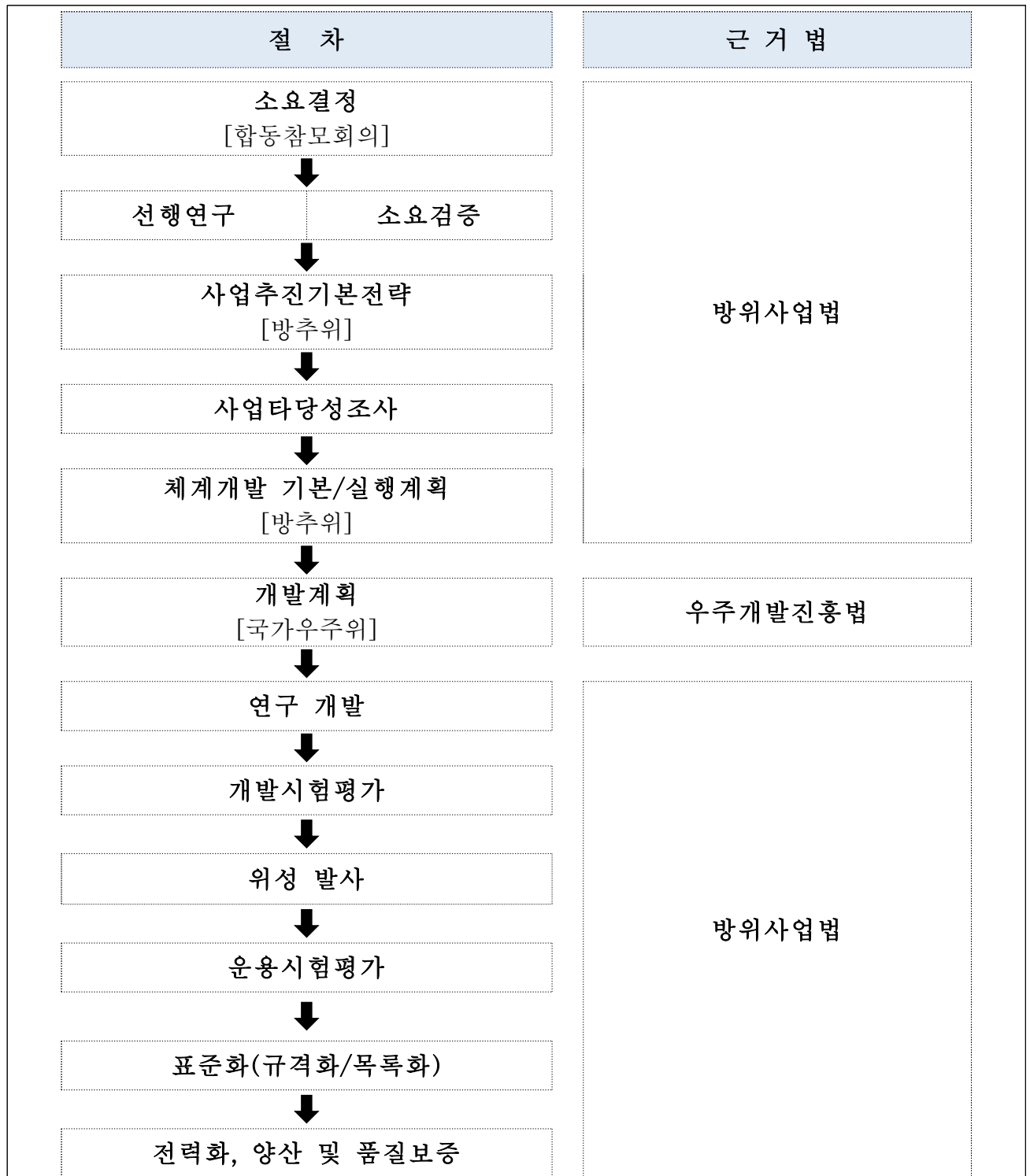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1. 국가우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구 분		국가우주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비 고		제2회('24.10.) 기준	'24.12. 기준
위원장		<u>대통령</u>	<u>국방부장관</u>
부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	방사청장
위원	정 부	기재부·과기부·외교부· <u>국방부</u> ·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정원장	기재부·과기부·산업부 실·국장, 국방부 차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방사청 차장, 방사청 각 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 본부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연구원·민간	국과연, 천문연, 항우연, ETR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경상대 교수, KAIST 교수, 서울대 교수, 창원대 교수, 전북대 교수, 항공대 교수 K社 대표이사, G社 대표이사	국과연 소장, 기품원 원장, 국방연 원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전문위원, 국회의원연수원 교수, 국과연 자문위원, 前 국회 예정처 처장, 서울대 교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 방위사업청 단독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는 보안 과제로 분류되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추진절차 조항 적용 제외